

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 상세 안내사항

1. 상품안내

- 매월 일정 금액을 24개월간 적금 저축 시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원(1인 최대 240만원)
- (상품종류)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정액적금(중도 변경 불가)
- (가입기간) 2년(24개월)
- (납입한도)
 - 5만원 상품가입자: 월 5만원 (2년 최대 120만원)
 - 10만원 상품가입자: 월 10만원 (2년 최대 240만원)
- (지급방식) 만기 일시지급(지원금은 만기 익월 지급)

2. 지원대상 조건

- 「예술인복지법」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(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)
 - 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자(공개 발표된 예술활동, 예술활동 수입, 경력단절예술인, 특수한 작업방식, 무형유산 관련 특례),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
 -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(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참여 불가)
- (나이) 신청일 기준 만 18세 ~ 만 39세 예술인
- (개인소득)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*이 당해 연도 기준 개인 중위소득 120%* 이내 예술인
 - * (소득금액)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상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의 소득금액(사업, 근로, 기타) 및 연 말정산 현황의 근로소득,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총합계
 - * (개인 중위소득 120%)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연34,444,987원
- (예술활동 확인) 예술활동 확인을 위한 온라인 설문 제출(총 4회)
 - * 총 4회 : 신청 1회, 2025년 말 1회, 2026년 말 1회, 만기 시 1회
- (수료증 제출) 2025년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「문화예술분야 성희롱·성폭력 예방」과정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한 자

3. 지원 내용

- (지원규모) 36억 원
- 매월 일정 금액을 24개월간 적금 저축 시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원(1인 최대 240만원)

4. 신청 및 가입 절차

○ 가입절차



○ (신청기간) 2025년4월23일(수) 10:00 ~ 5월8일(목) 17:00까지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

※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안내
 「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」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은 필수사항으로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.

- 예술인생활안정자금(www.artloan.kr)에서 온라인 신청(이메일, 우편, 방문접수 불가)
-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예술인 대상 서류 심사 및 선정자 적금 가입 안내
- 사업선정 후 재단이 안내한 가입기간 내 지정 금융기관의 적금 상품 가입

5. 제출서류

○ 소득금액증명원

- (발급처)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발급
- (발급기한)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
- (귀속년도) 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는 2023년 귀속 서류 발급 인정

(종합소득세 신고자 외) 2025.05.01. 이전 신청 시 2023년 귀속 서류 인정
 (종합소득세 신고자) 2023년 귀속 서류 인정

- (소득금액)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상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의 소득금액(사업, 근로, 기타) 및 연말정산 현황의 근로소득,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총합계
- 소득이 없을 경우, 사실증명원 제출 가능

[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및 소득금액 작성 가이드]

	귀속년도는 직전년도 제출 원칙 단, 종합소득세 신고자 외: 5월 1일 이전 신청 시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: 7월 1일 이전 신청 시 전전년도							전체 페이지 모두 제출 (1 / 2)
발급번호	소득금액증명							처리기간
	(2023년 귀속)							즉시
성명							주민등록번호	
주소								
◇ 종합소득세 신고(결정·경정) 현황 (단위 : 원)								
구분	종합과세						분리과세	총 결정세액
	이자	배당	사업	근로	연금	기타	합계	
수입금액	0	0			0			
소득금액	0	0	①	②	0	③	0	
* 종합과세 소득금액은 이월결산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* 분리과세 : 종합소득세 신고(결정·경정)한 분리과세 소득(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계약금이 위약금·배상금으로 대체된 기타소득)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합계액 * 총 결정세액 :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합계액								
◇ 연말정산(지급명세서 제출) 현황 [※ 종합소득세 신고(결정·경정) 현황에서 종합과세된 소득이 있는 경우 미기재] (단위 : 원)								
구분	소득발생처		지급받은 총액	소득금액	총 결정세액	비고		
	법인명(상호)	사업자등록번호						
근로소득								
	합계			④				
사업소득								
	합계			⑤				
여구소득								

-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
 - (수강방법)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「문화예술분야 성희롱·성폭력 예방」 교육
 - *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(sinmungo.kawf.kr) 접속 ▶ 회원가입(개인) ▶ 온라인 동영상 교육 수강 신청 ▶ 학습진도율 100% 달성 ▶ 설문조사 제출 ▶ 수료증 발급 (※ PC 및 모바일 기기로 모두 수강 가능)
 - 2025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교육만 인정

6. 선정발표: 2025년 5월 예정

- 선정자 발표 후, 예술인생활안정자금(www.artloan.kr) 개별확인 가능

7. 지원금 지급 및 납입 안내

- 지원금 지급 조건
 - 예술활동 확인 설문조사 제출자
 - * 총 4회 : 신청 1회, 2025년 말 1회, 2026년 말 1회, 만기 시 1회
 -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한 예술인
 - (입금기간) 전월 20일~당월 19일 입금분을 정상 입금 내역으로 인정
 - 24개월 간 적금 납입한 회차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
 - * 5만원씩 24회차 납입 = 본인 납입액 120만원 + 지원금 120만원 ⇒ 총 240만원 수령(+금융이자)
 - * 10만원씩 24회차 납입 = 본인 납입액 240만원 + 지원금 240만원 ⇒ 총 480만원 수령(+금융이자)
 - 미납 시 정상 납입한 회차에 대해서만 지원금 지급 인정
 - * (예시) 10만원 상품 가입 시 미납 입금 예시
 - (1회차)10만원 (2회차)미납 (3회차)미납 (4회차)10만원 ⇒ 1회차+4회차(20만원) 지원금 지급 인정
 - (1회차)10만원 (2회차)미납 (3회차)미납 (4회차)30만원 ⇒ 1회차+4회차(20만원) 지원금 지급 인정
- 지원금 지급 불가 조건
 - 예술활동 확인 설문조사 3회 이상 미제출자
 - 적금 7개월 이상 연속 미납자
 - 사업 선정 후 적금상품 미가입자
 - 적금 만기 전 상품 해지자
 - 사망 및 압류계좌로 확인된 자
 - 사업 선정 후 신청금액보다 적금 가입액이 적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
 - * (예시) 10만원 신청 접수 후 5만원 적금 가입 ⇒ 선정 취소
 - 적금 선납 시 지원금 지급 불가
 - * (예시) 10만원 상품 가입 시 선납 예시
 - (1회차)10만원 (2회차)230만원 ⇒ 지원금 지급 불가
 - (1회차)10만원 (2회차)10만원 (3회차)30만원 ⇒ 지원금 지급 불가
 - (1회차)10만원 (2회차)미납 (3회차)미납 (4회차)50만원 ⇒ 지원금 지급 불가
 - (1회차)10만원 ~ (22회차)10만원 (23회차)20만원 ⇒ 지원금 지급 불가

8. 가입 시 유의사항

- 아래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는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지원금 지급 불가
 - 2025년 『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』에 선정된 예술인
 - (예술활동증명 특례 완료자) 「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」, 「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」, 「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」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
 - 원로 예술인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
 - 『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』 및 본 사업의 운영 목적 등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직 중(사업 공고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)인 임직원
- 사업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 사업 신청
- 연락 불가 및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필히 사업 신청 전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(www.kawfartist.kr) 내 개인정보 업데이트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이메일, 주소 등) 후 사업 신청
- 지원금은 만기 후 익월 지급되며, 가입 시 개설한 협력 금융기관 입출금 계좌로 지급 (*계좌 해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 책임이오니 반드시 계좌 유지)
- 사업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『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』에 선정된 예술인은 2년 만기 도래 전 동일 사업 중복 참여 불가

9. 문의

-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)3668-0200 (월~금 09:00~18:00, 점심시간 제외)
-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(www.kawfartist.kr) 1:1 문의

2025년 3월 28일
한국예술인복지재단